

이 공고문은 모든 근로자나 직원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고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최저임금 발효일 2016년 7월 1일



시간당 **\$10.50**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제정된 최저임금 시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매년 최저임금 조례 섹션 187.02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스케줄에 따라 적용 됩니다.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일년 연기 할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임금 표준부서로 부터 인상 유예 자격조건을 승인받은 직원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일년 연기할수 있습니다. 아래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스케줄을 참고 하십시오.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7/1/2016	\$10.50
7/1/2017	\$12.00
7/1/2018	\$13.25
7/1/2019	\$14.25
7/1/2020	\$15.00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또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격요건이 승인된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7/1/2017	\$10.50
7/1/2018	\$12.00
7/1/2019	\$13.25
7/1/2020	\$14.25
7/1/2021	\$15.00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에 따라 계약 관리기관 (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 임금표준부(Office of Wage Standards) 를 지정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직장, 직원 인터뷰 및, 급여 기록을 검토합니다. 임금표준부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 시행위반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게됩니다: 1)최저임금 시급 비준수, 2)공지, 게시 비준수 및 급여 기록, 급여장부 보관 비준수, 3)직원에게 가해진 보복 행위. 근로자나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8.04항(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tion 188.04)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와 그로인한 고용주의 부당한 취급 및 보복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유급 병가

발효일 2016년 7월 1일

2016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를 제외하고 모든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유급 병가는 로스앤젤레스 도시내에서 특정한 주에 최소 2시간을, 1년에 30일 이상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2017년 7월 1일 부터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	
연초 발생	고용 1년 주기 또는 달력상 매년 초에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 또는-
누적 발생	노동 30시간 당 1시간의 유급 병가
72시간 제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며 최소 7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더 높은 제한을 둘 수 있다.
고용종결	고용주는 직원과의 고용 종결시,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회복	직원의 고용 종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가 회복된다.

사용	
언제	직원은 고용 받은 지 90일째 되는 날이나 2016년 7월 1일 중 나중 날짜로 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 가족, 혈연, 친밀한 사람을 위해 유급 병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때 이를 제공해야한다. 시간 사용의 자격사항은 LAMC 187.04(G) 항에 나와 있다.
	유급 병가의 사용은 매년 48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7.06항에 의하면 직원은 유급 병가를 받는 권리 행사로 인한 고용주의 차별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임금표준부로 연락 하십시오.

전화 1-844-WAGESLA(924-3752), 이메일 wagesla@lacity.org, 웹사이트 wagesla.lacity.org.

미국 장애인법의 제 2조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써, 로스앤젤레스 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